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(안)

의 안 번 호	2015-120

제출연월일 : 2015. 11. .
제 출 자 : 거창군수

1. 제안이유

○ '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'에 따라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함.

2. 출연개요

○ 근거법령 : 「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 제7조 및 제9조

○ 대 상 : 거창화강석 연구센터(이사장 장민철)

○ 사 업 비 : 200백만원(출연 예정금액)

- 2016. 예산편성 요구사항 (단위:백만원)

사업기간	2015년 예산액	2016년 요구액*	재원별				
			계	국 비	도 비	군 비	기 타
2016년	200	200	200	-	-	200	-

○ 사업내용 :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(인건비 등)

3. 부서의견

○ 거창화강석 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수행중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함.

4. 참고사항

○ 출연 기관현황 : 붙임 1

○ 관계 법령 : 붙임 2

[붙임 1] 출자·출연 기관현황

거창화강석 연구센터

<table>
<tr><td rowspan="2">설립근거</td><td colspan="4" rowspan="2">법률 : 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</td><td>전화번호 : 055-940-3924</td></tr>
<tr><td>홈페이지 : granite.go.kr</td></tr>
<tr><td>주요연혁</td><td colspan="3">법인허가 : ‘07. 1. 31</td><td>기관형태
(출자, 출연)</td><td>출연기관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인원현황
(‘15.10.
현원기준)</td><td colspan="2">계</td><td colspan="2">정규직</td><td>비정규직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5명</td><td colspan="2">5명</td><td>명</td></tr>
<tr><td rowspan="13">임 원
(‘15.10.기준)</td><td>직 책</td><td>성 명</td><td colspan="2">주요경력</td><td>임 기</td></tr>
<tr><td>이사장</td><td>장민철</td><td colspan="2">거창군청(군수 권한대행)</td><td></td></tr>
<tr><td>상임이사</td><td>김건기</td><td colspan="2">(재)거창화강석 연구센터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10">비상임이사</td><td>조철효</td><td colspan="2">경남도립거창대학</td><td></td></tr>
<tr><td>강찬홍</td><td colspan="2">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</td><td></td></tr>
<tr><td>최일수</td><td colspan="2">거창석재조합(주)</td><td></td></tr>
<tr><td>임진홍</td><td colspan="2">거창석산협회</td><td></td></tr>
<tr><td>주우일</td><td colspan="2">경남도립거창대학</td><td></td></tr>
<tr><td>김성호</td><td colspan="2">한국승강기대학</td><td></td></tr>
<tr><td>홍세선</td><td colspan="2">한국지질자원연구원</td><td></td></tr>
<tr><td>정창석</td><td colspan="2">거창군청(승강기경제과장)</td><td></td></tr>
<tr><td>신판성</td><td colspan="2">거창군청(산림녹지과장)</td><td></td></tr>
<tr><td>감 사</td><td>이상철</td><td colspan="2">이상철 법률사무소</td><td></td></tr>
<tr><td>주요기능</td><td colspan="5">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자본금
(단위:백만원)</td><td colspan="2">10
(직전연도말 기준)</td><td>출자・출연액
(단위:백만원)</td><td>200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최근3년간
예산 현황
(단위:백만원)</td><td>연도</td><td>2012</td><td>2013</td><td>2014</td><td rowspan="4">재무현황
(백만원)
‘14.12.31기준</td><td>자산</td><td>107</td></tr>
<tr><td>예산액</td><td>200</td><td>200</td><td>200</td><td>부채</td><td>13</td></tr>
<tr><td>지자체
지원액</td><td>200</td><td>200</td><td>200</td><td>자본</td><td>10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경영성과
(단위:백만원)
‘14.12.31기준</td><td colspan="3">총수익</td><td>총비용</td><td>당기순이익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330</td><td>290</td><td>40</td></tr>
</table>

[붙임 2] 관계법령

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

(　　제정) 2006.12.12 조례 제1825호
(일부개정) 2008.01.14 조례 제1878호

제1조 (목적)
이 조례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08. 1. 14)

제2조 (법인격 및 명칭)
연구센터는「민법」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, 그 명칭은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(이하 "연구센터" 라 한다)라 한다.(개정 2008. 1. 14)

제3조 (사무소)
연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

제4조 (운영 등)
① 연구센터의 설립·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「민법」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.(개정 2008. 1. 14)
② 연구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5조 (임원)
① 연구센터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.
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되 임기와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6조 (사업)
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안정적인 원석확보 및 자연 친화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사업
2. 화강석 신소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
3. 산·학·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
4. 산업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유통망 구축 운영사업
5. 화강석 제품의 성능 시험 및 검사, 품질 평가 등 사업
6. 정부·지방자치단체·기업 등의 위임·위탁사업과 용역사업
7. 산업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 사업
8. 그 밖에 연구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 7조 (재산조성 및 운영경비)
연구센터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.
1. 정부·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
2.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
3. 기타 수입금

제8조 (수익사업)
연구센터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.

제9조 (출연금 등의 지원)
① 군수는 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.
② 연구센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·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10조 (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)

군수는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제 11조 (업무의 위탁)
① 군수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제 12조 (보고 및 검사)
군수는 필요한 경우, 연구센터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 13조 (시행규칙)
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.1.14.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